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1. 09.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10827호(2011. 7. 14)호로 일부개정 공포되어 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일수를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조정
- 시의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을 “서류 미제출과 증인선서 거부”를 포함하여 확대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41조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7일 이내”를 “9일 이내”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선 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본회의)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감사)①생략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 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생략 ④생략 ⑤생략	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9일 이내 -----, ----- ----- ----- ----- ----- ----- -----.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illegible]